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3
------	------

2021. 9.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서윤기·최선 의원
(강동길 의원 외 20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는 각종 지원정책

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인가구 정책 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을 추가함(안 제9조).
- 나.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의2).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의5).
-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민관협력 구축 등의 전부개정 사항을 담고 있음.

나. 1인가구 현황과 정책 추진 환경

-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중 31.7%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음(2020년 기준).

< 가구원 수별 가구 현황 >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 가구	비중	1인	비중	2인	비중	3인	비중	4인 이상	비중
			가구		가구		가구		가구	
2015	19,111	100.0	5,203	27.2	4,994	26.1	4,101	21.5	4,813	25.2
2016	19,368	100.0	5,398	27.9	5,067	26.2	4,152	21.4	4,751	24.5
2017	19,674	100.0	5,619	28.6	5,260	26.7	4,179	21.2	4,616	23.5
2018	19,979	100.0	5,849	29.3	5,446	27.3	4,204	21.0	4,481	22.4
2019	20,343	100.0	6,148	30.2	5,663	27.8	4,218	20.7	4,315	21.2
2020	20,926	100.0	6,643	31.7	5,864	28.0	4,200	20.1	4,218	20.2

※ 출처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자료(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020.6.25.)에서 2020년 현황을 추가해 재구성함.

- 청년, 중장년, 노년 전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음.

< 연령대별 1인가구수 및 증감 >

(단위 : 만가구)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0년(A)	225.5	57.3	42.8	29.7	24.9	35	35.8
'20년(B)	664.3	134.3	111.5	90.3	103.9	103.8	120.2
차이(B-A)	438.8	77	68.7	60.6	79	68.8	84.4

※ 출처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자료(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2020.6.25.)에서 2020년 현황을 추가해 재구성함.

-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34.9%(139만 가구)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관악구(51.9%), 중구(41.4%), 종로구·광진구(41%), 금천구(40.9%), 동대문구(40.5%)에서 높게 나타남(통계청, 2020년 기준).
- 1인가구의 증가는 초혼연령의 상승, 인구의 고령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심화, 생활편의성 증가에 따른 독신생활 선호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¹⁾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2.5%), ‘외로움’ (23.3%), ‘경제적 불안감’ (20.3%)으로 나타났음.

1) 반은석·김동재, “1인 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고양시 1인 가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제15집(2017. 6),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 >

(단위 : %)

구분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	주위 시선	안전에 대한 불안감	임종에 대한 불안감	주거 관리 어려움	의지할 사람 부족
전체	20.3	23.3	32.5	6.5	6.6	3.8	3.7	2.5
남자	16.5	26.5	36.1	6.6	1.3	4.3	2.5	4.3
여자	22.7	21.2	30.1	6.5	10.0	3.6	4.5	1.5
20대 이하	8.9	16.8	44.1	7.9	7.4	1.9	5.1	2.5
30·40대	15.4	21.7	34.1	9.4	4.1	2.7	5.7	3.3
50·60대	33.9	28.9	22.7	1.2	0.7	4.5	1.7	2.9
70대 이상	20.4	31.1	20.5	6.0	6.7	9.3	0.0	0.0

- 1인가구는 성별·연령별·소득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 취업, 복지,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하고(2020.1.),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5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임시조직으로 설치된(2021.4)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를 지난 7월에 정규기구화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28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1인가구 지원 추경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 2,084,960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 737,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 342,200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 380,000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 1,315,360 ·1인가구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4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실태조사 : 380,000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 300,000 ·자문위원회 등 운영 : 20,000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 21,833 ·초단시간공공근로자 등 보수 : 7,250 ·부서 특정업무경비 : 8,700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입법체계

- 개정안은 ‘1인가구’ 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면서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사회 실태를 반영해, 용어 사용례에 맞게 ‘1인 가구’ 를 ‘1인가구’ 로 일괄 정비하였음.
- 또한, 안 제11조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센터(안 제12조), 이용시설(안 제13조), 운영의 위탁(안 제14조), 지도·점검(안 제15조), 정책자문위원회(안 제16조), 단체 등 지원(안 제17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18조), 표창 및 포상(안 제19조) 등이 신설되었음.

<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체계 >

현행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u>1인 가구</u>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u>1인가구</u> 지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신 설>	<u>제4조(적용대상)</u>
제4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제5조(책무 등)	제6조(책무 등)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9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9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u>1인 가구 복지 지원</u>)	제11조(<u>지원사업</u>)
<신 설>	<u>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u>
<신 설>	<u>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운영)</u>
<신 설>	<u>제14조(운영의 위탁)</u>
<신 설>	<u>제15조(지도·점검 등)</u>
<신 설>	<u>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
<신 설>	<u>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u>
<신 설>	<u>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u>
<신 설>	<u>제19조(표창 및 포상)</u>
제11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보완되거나 신설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음.

(2) 적용대상(안 제4조 신설)

-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현행 조례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제3조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정의만으로 1인가구를 특정하기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이는 연령, 성별, 소득 등에서 상이한 주민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1인가구의 특성상,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경우 오히려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 중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지원 요청자가 동거인이 있더라도 고령, 질병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1인가구의 지원 범위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지원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지원사업 확대(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 사회적 관계·정서적 교류, ▶ 경제적 안정 및 자립, ▶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 질병·외로움 예방·돌봄·건강 증진, ▶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 인식 개선, ▶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운영 등을 신설하였음.

<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규정 비교 >

현행	개정안
<p>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p> <p>2. <u>삭제</u></p> <p>3. ~ 5. (생략)</p> <p>6. <u>1인 가구 복지 관련</u> 단체·기관 지원사업</p> <p>7. <u>1인 가구 복지</u>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1조(지원사업) <u>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p> <p>2. <u>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1인가구 관련</u> 단체·기관 지원사업</p> <p>7. <u>1인가구 삶의 질</u>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p> <p>8. <u>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u></p> <p>9. <u>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u></p> <p>10. <u>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u></p> <p>11. <u>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u></p>

	<u><신 설></u>
	<u><신 설></u>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u><삭 제></u>

- 1인가구는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 연장, 독립된 경제활동, 이혼·별거, 고령화 등 연령별·세대별·소득계층별로 자발적·비자발적인 다양한 형성 원인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지원대상별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함.
- 개정안은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경제적 특성과 욕구, 상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요구에 맞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4)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안 제12조~안 제15조 신설)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지도·점검, 보고, 서류제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을 명시하였음.
- 지원센터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구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시설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사업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안 제16조 신설)

- 안 제16조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의원, 서울시 담당 실·본부·국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지원사업의 위탁과 운영에 대해 심의·자문을 수행하

면서 1인가구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1인가구는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하고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므로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1인가구 지원 기반 조성(안 제17조~안 제19조 신설)

- 안 제17조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 자치구를 포함해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안 제19조는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정책의 개발과 집행·모니터링·환류가 가능하고, 표창과 우수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1인가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

라. 종합의견

-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상생활, 문화·경제·소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가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여전히 3~4인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이 마련되어야 함.
-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인가구를 위한 추진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신설, 광역지원센터와 이용시설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사회구성원의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인가구에 치우친 정책적 기조를 1인가구로 선회하고,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4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서윤기, 최 선 의원(2명)
찬 성 자 : 강동길, 권수정, 권영희,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제리,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박상구, 봉양순,
양민규, 여 명, 유 용,
이병도,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장상기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는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1인가구”의 용어 사용례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정비함
- 나.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적용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로 보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11조)
- 라. 1인가구 지원센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3조)
- 마.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바. 관련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표창 및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와 제13조의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나 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자치구별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81000000004

비용추계서

요청인 :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10

회신일 : 2021.08.11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비용발생
 - 조례안 제11조에 신설된 제8호부터 제13호의 지원사업과 제13조의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운영, 제17조의 1인가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12조), 운영의 위탁(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6조)에 따른 비용

나. 전제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12조), 운영의 위탁(제14조)에 대한 비용
 -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민간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중 센터 이전 및 부대비용은 처음연도만 지출하고, 그외 운영비는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6조)에 따른 비용
 -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외부전문가 10명으로 하며, 위원회의 개최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5년(2022~2026)

라. 방법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사업추진 부서인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2022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추계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21.7.)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179백만원(연평균 835.8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센터 설치 (제12조, 제13호)		50,000	-	-	-	-	50,000
	지원센터 운영 (제12, 13, 14조)		816,000	816,000	816,000	816,000	816,000	4,080,000
	위원회 설치·운영 (제16조)		9,800	9,800	9,800	9,800	9,800	49,000
	소계(b)		875,800	825,800	825,800	825,800	825,800	4,179,000
□ 총 비용(b-a)			875,800	825,800	825,800	825,800	825,800	4,179,000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s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12조), 운영의 위탁(제14조)에 대한 비용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6조)에 따른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지원센터 설치 비용(1년) ≙ 50,000천원
 - 지원센터 설치비용 = 50,000천원
 - ※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022년 예산(안) 참고
 -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전달체계 개편 예산/민간위탁금/센터이전 및 부대비용 : 50,000천원
- 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비용 ≙ 4,080,000천원
 - 5년간 지원센터(민간위탁) 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비용 = 816,000천원
 - ※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022년 예산(안) 참고
 -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전달체계 개편 예산/민간위탁금/사업비 등 : 816,000천원
- 위원회 설치·운영비 ≙ 49,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용 = 9,800천원
 -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업무추진경비
 - = (200천원 × 10명 × 4회) + (30천원 × 15명 × 4회)
 - = 8,000천원 + 1,800천원
 - = 9,800천원

- ※ 회의참석 수당은 2시간 이상 진행: 1인당 20만원 적용(시 공무원 및 시의원 지급제외)
-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3만원으로 책정